

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장인수 의원 대표발의]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22.0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5조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623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의의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22.0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5조).

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의 임용·복무 등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 중 “오산시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</u>에 의하여 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5조 (생 략)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<u>오산시 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5조(정책지원관) ① <u>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</u></p> <p>② <u>정책지원관의 임용·복무 등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규칙</u>-----</p> <p>-----</p>

[별첨]

관계법령 발췌서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, 전부개정]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[시행 2022.1.13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12.16., 전부개정]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